

定 款

(2025년 3월 26일 개정)

강남제비스코주식회사

강남제비스코주식회사 정관

제 정	1952. 7. 16	15차개정	1998. 3. 20
1차개정	1975. 8. 30	16차개정	1999. 3. 19
2차개정	1975. 10. 24	17차개정	2000. 3. 17
3차개정	1976. 2. 24	18차개정	2001. 3. 17
4차개정	1976. 9. 25	19차개정	2002. 3. 15
5차개정	1978. 2. 27	20차개정	2004. 3. 26
6차개정	1980. 2. 27	21차개정	2005. 3. 18
7차개정	1984. 2. 27	22차개정	2010. 3. 19
8차개정	1985. 2. 28	23차개정	2012. 3. 29
9차개정	1986. 2. 27	24차개정	2015. 3. 27
10차개정	1987. 2. 27	25차개정	2015. 12. 23
11차개정	1988. 2. 27	26차개정	2016. 3. 24
12차개정	1990. 2. 28	27차개정	2020. 3. 25
13차개정	1995. 2. 25	28차개정	2022. 3. 29
14차개정	1996. 2. 29	29차개정	2025. 3. 26

第 1 章 總 則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강남제비스코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KANGNAM JEVISCO CO.,LTD라 표기한다. <개정 2015. 12. 23>

제 2 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0. 3. 17>

1. 도료 및 안료제조 판매업
2. 무역업
3. 제유업
4. 잉크업
5. 중금속 비누업
6. 합성수지 제조, 가공 및 판매업
7. 부동산의 임대업
8. 건축자재 제조 및 가공업
9. 건축공사업 및 도장 공사업
10. 독극물 수출입업
11. 전산자료서비스업
12. 통신장비 판매업
13. 화장품 제조 판매업

- 14.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일체
- 15. 생명 및 환경공학 관련 부대사업 일체
- 16. 전각호에 부수되는 일체의 사업

-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사업소, 출장소 또는 공장을 둘 수 있다.
- 제 4 조 (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visco.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한다.<개정 2015. 12. 23>

第 2 章 株 式

-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만주로 한다.
 <개정 2025. 3. 26>
-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개정 2025. 3. 26>
- 제 7 조 (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개정 2012. 3. 29>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신설 2012. 3. 29>
- 제 8 조 (종류주식의 數와 內容)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배당우선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375만주로 한다. <개정 2012. 3. 29>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9% 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개정 2012. 3. 29>
 ③ 普通株式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普通株式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개정 2012. 3. 29>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 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개정 2012. 3. 29>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優先的 配當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2. 3. 29>
 ⑥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有償増資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無償

増資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개정 2012. 3. 29>

-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개정 2022. 3. 29>

제 9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개정 2020. 3. 25>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이회사의 주주는 新株發行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1998. 3. 2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의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04. 3. 26>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0. 3. 19>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개정 2010. 3. 19>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개정 2010. 3. 19>
4.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0. 3. 19>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0. 3. 19>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04. 3. 26>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의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29>

④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항목변경 2012. 3. 29>

⑤ 주주가 新株引受權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端株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항목변경 2012. 3. 29>

제10조의2 <조항삭제 2004. 3. 26>

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 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 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자구수정 2002. 3. 15>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 8 의 최대주주 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 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개정 2010. 3. 19>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0. 3. 19>

3. <삭제 2010. 3. 19>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개정 2010. 3. 19>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 3. 15>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 3. 15>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개정 2010. 3. 19>

나. 당해 주식의 액면 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개정 2010. 3. 19>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4. 3. 26>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5>

⑧ <조항삭제 2022. 3. 29>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자구수정 2002. 3. 15>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 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개정 2002. 3. 15>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02. 3. 15>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02. 3. 15>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구수정 2002. 3. 15>

제10조의4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개정 2022. 3. 29>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개정 2010. 3. 19>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複本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개정 2020. 3. 25>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 3. 29>

제 12 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3. 29>

제 13 조 (기준일) ① <조항삭제 2022. 3. 29>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개정 2022. 3. 29>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29>

第 3 章 社 債

제 14 조 (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9>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9>

제14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1.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신설 2010. 3. 19>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10. 3. 19>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신설 2010. 3. 19>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45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150억원은 무의결권배당우선전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개정 2012. 3. 29>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개정 2022. 3. 29>

⑥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6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①항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전환대상 주식의 액면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10. 3. 19>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10. 3. 19>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10. 3. 19>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150억원은 普通株式으로 150억원은 무의결권배당우선전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2. 3. 29>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 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조항삭제 2022. 3. 29>

⑥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제①항의 사유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전환대상 주식의 액면가로 할 수 있다.<개정 2010. 3. 19>

제15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 3. 29>

제 16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 3. 25>

第 4 章 株主總會

제 17 조 (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定期株主總會와 臨時株主總會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개정 2022. 3. 29>

제 18 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15>

②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매일경제신문과 부산광역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부산일보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3. 19>

제 20 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4. 3. 26>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04. 3. 26>

제 22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3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이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개정 2004. 3. 26>

제 24 조 (의결권의 不統一行使)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不統一行使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不統一行使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 3. 26>

제 25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29>

제 27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개정 1996. 2. 29>

第 5 章 理事 . 理事會 . 監事委員會

제 28 조 (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5>

② <본항삭제 2015. 3. 27>

제 29 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5. 3. 27>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 3. 19>

제 30 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개정 2020. 3. 25>

② <본항삭제 2015. 3. 27>

제 31 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8조에서 정하는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3. 27>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제 32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5. 3. 27>

②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5. 3. 27>

제 33 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 3. 29>

제33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7>

제33조의3 <조항삭제 2012. 3. 29>

제33조의4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 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3. 27>

제 34 조 <조항삭제 2015. 3. 27>

제 35 조 <조항삭제 2015. 3. 27>

제 36 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6>

제 37 조 (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단서 신설 2012. 3. 29>

② 이사회 의장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8 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17>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제38조의2 (위원회) ①이사회는 결의로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와 경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 3. 24>

②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감사위원회는 제외한다.<개정 2020. 3. 25>

③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 3. 27>

제 39 조 (이사의 보수와 이사 및 비등기 임원의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15. 3. 27>

② 이사 및 비등기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5. 3. 27>

제39조의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5. 3. 27>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신설 2015. 3. 27>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5. 3. 27>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9>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생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개정 2022. 3. 29>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신설 2022. 3. 29>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신설 2022. 3. 29>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 이어야 한다. <신설 2015. 3. 27>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2. 3. 29>

제39조의3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신설 2015. 3. 27>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7>

③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7>

④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7>

⑤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7>

⑥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개정 2020. 3. 25>

⑦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이를 위한 세부 사항은 감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0. 3. 25>

⑧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신설 2015. 3. 27>

⑨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7>

제39조의4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第 6 章 計 算

제 40 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1 조 (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監査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1. 대차대조표

2. 손익 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파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개정 2012. 3. 29>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신설 2012. 3. 29>

-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監査報告書を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9>
-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9>
- 제41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
여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
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5>
- 제 42 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
한다. <개정 1998. 3. 20>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제 43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9>
-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6>
- 제 44 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제 45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또는 기타
의 법령에 의한다.

附 則(1996. 2. 29)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2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의 2,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43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전환사채 및 新株引受權府社債의 발행에 관한 적용 예)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附 則(1998. 3. 20)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1999. 3. 19)

1. 이 정관은 199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3항은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00. 3. 17)

1. 이 정관은 200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01. 3. 17)

1. 이 정관은 2001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02. 3. 15)

1. 이 정관은 200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04. 3. 26)

1. 이 정관은 200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05. 3. 18)

1. 이 정관은 200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0. 3. 19)

1. 이 정관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내용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2. 3. 29)

1. 이 정관은 201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33조의4, 제34조, 제37조, 제41조, 제43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5. 3. 27)

1. 이 정관은 2015년 3월 27일 주총승인 후 즉시 시행한다.

附 則(2015. 12. 23)

1. 이 정관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16. 3. 24)

1. 이 정관은 2016년 3월 24일 주총승인 후 즉시 시행한다.

附 則(2020. 3. 25)

1. 이 정관은 제6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22. 3. 29)

1. 이 정관은 제7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2025. 3. 26)

1. 이 정관은 제7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